

최근 보도된,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 소속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민간이양 및 용역전환 검토 96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끼워넣고 있다. 이른바 정부 업무의 자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이거나 지역주민이거나 요컨대 공공(公共)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18세기 인권혁명 이래 시민이 쟁취한 권리였다. 이 권리는 지식과 정보를 일부의 계층이 독점할 수 있다는 사상에 대한 저항에서 얻어진 것이며, 헌법적 개념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함께 소위 수익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된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로 신봉되고 있는 것이다.

짧게 말하면 도서관은,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知的自由)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로서, 이는 국가(정부)가 그 어떤 자에게도 떠넘길 수 없는 고유의 책임인 것이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구체화 시킨, 우리의 현행법(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규정들을 보자.

법은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 기록물을 망리적으로 수집하여 영구보존하면서 이를 후세에 전승하고 이용케 하는 기능과 책임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지워 놓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의 기억(記憶)을 총체적으로 저장하여 유효·적절하게 재생,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의 끊임없는 꿈을 이어가려는 국가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원대한 이념과 거대하고도 치밀한 메카니즘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해 버리겠다는 말인가.

각 종 각 급 도서관으로 이루어지는 한 나라의 “도서관체제”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지니는 기억의 총화를 의미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이 도서관체제를 하나의 망(網)으로 연결하여 그 정점에서 이들을 통괄하고 지도·지원하는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이 고도의 정책적 기능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말인가.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이미 “국가”의 벽을 넘어 “인류”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의 정부는 정보의 생산과 조직 및 가공, 그리고 그 세계적 공유(共有)라는 과제를 위하여 일정량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갖도록 되었다. 이 같은 범세계적 사업을 위하여 ISO, IFLA 등의 국제기구가 발벗고 나선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끊임 없이 국가 간의 교섭과 절충이 전개되고 있는 세상이다.

문헌정보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각 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하고, 이 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채택,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도 법률로 이것을 받아들여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언필칭 “정보화시대”를 말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을 민간에게 맡겨 놓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돼 보겠다는 말인가.

공공 목적의 도서관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이므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자체 수입은 한 푼도 없는 기관이다. 소위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할 출발점 요소가 없는 것이다. 오직 국가적 목적과 소망, 그리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 주는 한 민간에 넘기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강변하려면, “국가의 기능 중에서 민간에게 맡겨버리지 못할 일이란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말이 되겠는가.

도대체 이 나라에는 국가 정책에 적용할 잣대가 경제논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나라의 지혜를 키우고자 집현전을 연 세종대왕도, 국민의 힘을 기르고자 도서관 세우기를 주창한 유길준 선생도 다 우리의 선조이거늘.

오늘, 내 나라 정부의 수준이 슬프고 무섭다.